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 (운영 측면 검토)

2016. 3. 14. 기획제2심의관실

1. 검토 배경

▣ **사법행정에 간섭을 목표로 판사회의를 이용하려는 조직적 시도 포착**

● 국제인권법커뮤니티 내 인사모 활동

- 2016. 2. '판사회의 실질화 방안'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실시

● 2015. 12. 21. 인천지방법원 판사회의 내규 개정

- 내부판사회의 의장 선출직으로 변경 / 내부판사회의 3회 소집 명시

● 2016. 2. 1. 송○○ 판사의 게시글

- 「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」

● 2016. 3. 14. 김○○ 부장판사의 게시글

- 「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2차 건의문」

▣ **규칙/내규 개정 등 제도적 대응의 어려움**

● 내부판사회의 폐지 등을 통한 판사회의 억제 시도 : 사실상 불가능

- 핵심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일반 법관들까지 집단적 반발 가능

● 판사회의 활성화 취지의 내규 개정 주도 ⇒ 헤게모니 선점 : 실익 無

- 가능한 안건 : 내부판사회의 의장 선출 / 판사회의 개최횟수 증대 등

- 한계 : 헤게모니 선점 효과 미미 / 일회성 효과 / 내규 개정의 비가역성

▣ **판사회의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순기능 극대화 필요**

● 인식의 전환 필요 : 제도적 문제 ⇒ 운영의 문제

2. 개념도

3. 세부적 방안 검토

가. 법원장 주도의 의견 수렴 및 안건 선정

▣ 현 상황

- 법원장의 판사회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
  - ⇒ 판사회의 관련 의견 수렴에 소극적
  - ⇒ 판사회의 논의 안건 부실
  - ⇒ 판사회의 무용론, 판사들의 무력감
  - ⇒ 판사회의 실질화, 내부판사회의 활성화 빌미 제공
    법원장에 대하여는 불통 이미지 고착
    사법행정에 관하여 "법원장 ⇌ 일선 법관" 전선 형성
- 법원장의 인식 전환 필요함

▣ 구체적 개선 방안

- 판사회의 전 법원장의 다각도의 의견 수렴 노력

- 편안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판사들의 '애로사항' 청취 ⇒ 판사회의 안건 제출 독려

- 단체 메일을 통해 판사회의 안건 적극적 제출 독려

● 활발한 성향의 판사 등에게 안건 제출 부탁

- 활발하고 긍정적 성향의 판사에게 판사회의 안건을 제안해 보라 요구

- 해외연수 선발을 희망하는 판사들은 법원장의 부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

▣ 기대 효과

● 법원장의 소통 이미지 선점

● 안건 제출, 선정, 판사회의에서의 논의 진행 등 판사회의 관련 전 과정에서 법원장이 헤게모니 장악

● '법원장 - 일선 판사' 사이의 소통 강화 ⇒ 우회 수단(내부판사회의 등)을 통한 소통 무력화

- 핵심 세력의 방안 :
  기존 판사회의 안건 부실, 소통 부재
  ⇒ 소통에 관한 욕구불만 증대
  ⇒ 내부판사회의 개최를 통한 소통 욕구 자극
  ⇒ 소수의 법관이 내부판사회의 주도권 획득
  ⇒ 내부판사회의 명의 안건 제안
  ⇒ 전체판사회의에서 특정 보직의 전체 요구라 포장
  ⇒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 주도

- '법원장 - 일선 판사' 소통 강화 ⇒ 위와 같은 매커니즘 무력화
  - 안건 풍부, 소통 강화 ⇒ 소통 욕구 충족 ⇒ 내부판사회의 활성화 명분⇓
  - 전체 판사회의의 메인 이벤트 성격 강화 ⇒ 내부판사회의 중요도 감소
  - 법원장 수집 안건수 多, 소수 법관 주도 안건 小 ⇒ 법원장 논의 주도

나. 안건의 다양화

▣ 현 상황

● 논의 안건의 정형화

- 상반기 : 사무분담의 결과 보고, 전국법원장간담회 결과 보고

- 하반기 : 사무분담의 기본원칙 심의, 전국법원장회의 결과 보고

● 결국 관심의 초점 = 사무분담

⇒ 판사회의 : 사무분담을 둘러싼 법원장과 판사들의 전쟁터로 인식

▣ 구체적 개선 방안

● 생활 밀착형 다양한 아이템 발굴 ⇒ 안건화

- 판사들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발굴

- 타 법원에서 실시되는 사례 검토하여 선제적 발굴

● 발굴된 안건에 대한 심의 ⇒ 실질적 개선

● 사법행정위원회에 제안할 법원 명의의 안건 심의

▣ 기대 효과

● 판사회의에서의 무게중심 이동 :

"사무분담 등 인사문제" ⇒ "근무여건 개선 등 복지문제"

● 법원장과 판사의 관계 개선 : 대립적 관계 ⇒ 문제를 해결해주는 관계

● 판사회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

● 사법행정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심의

⇒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관심 증가

⇒ "법원행정처 – 법원장 – 일선 판사" 사이의 일관된 소통의 흐름 형성

다. 각급 법원 주요 행사의 실질적 심의

▣ 현 상황

- 각급 법원의 주요 행사 : 상/하반기 체육행사, 전체 법관 워크샵, 대국민 소통행사 등
- 주요 행사의 결정 절차 : 법원장, 수석부장의 일방적인 결정

- 워크샵 등 큰 행사는 법원장,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정해짐
- 체육행사 관련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기도 하나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많음

- 법관들, 사법행정에서 소외감 느낌

▣ 구체적 개선 방안

- 상반기 판사회의에 '워크샵 논의 안건', '워크샵 개최지/행사방안', '체육행사 장소', '각종 소통행사에 대한 행사 종류 선택, 여부 결정' 등의 심의 안건을 상정

- 판사회의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지가 나와 있어야 함 (추상적/포괄적 논의는 오히려 유해할 수 있음)

- 하반기 판사회의에서는 1년간 행사에 관한 평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 가능

▣ 기대 효과

- 논의 안건의 다양화에 기여
- 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에 관한 심의여서 관심을 높일 수 있음
- 법관들의 만족도 제고 : 사법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
- 법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

- 통상 각종 행사 직전에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
  ⇒ 준비 부족으로 행사 내용 부실화 초래

- 상반기 판사회의 전에 각종 행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법원 운영의 효율성 높일 수 있음

라. 심의 안건에 대한 feed back 강화

▣ 현 상황

● 판사회의는 일회성 행사로 그침 ⇒ 판사회의 무용론 / 회의론

▣ 구체적 개선 방안

● 이번 판사회의에서 전회 판사회의 심의 안건의 처리 결과 보고

- 실제로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안건 보고

- 처리되지 않은 안건 보고 및 이유 설명 (아래 일반직 설명절차 참조)

▣ 기대 효과

● 판사회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속성 행사라는 이미지 정착

- 사법행정에 관한 안정적 의사소통구조 확보

● 법원장이 판사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을 신중히 검토하였다는 이미지 제공

마. 일반직 직원에 의한 설명절차 도입

▣ 현 상황

● 판사회의에서 설명하는 사람 :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

- 설명의 내용이 부정적인 경우 ⇒ 법원장/수석부장판사가 비난의 대상이 됨

▣ 구체적 개선 방안

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(회의) ② 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● 일반직 직원(사무국장, 총무과장 등)에 의한 설명절차 도입

- 회의 전에 제출된 안건 중 채택하기 어려움이 명백한 안건 :
  법원장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기 보다는,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일반직 담당 직원(사무국장, 총무과장 등)에게 회의장으로 오라고 하여 설명을 하게 함

- 이전 판사회의에서 긍정적으로 심의되었던 안건 중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안건 :
  차회 판사회의에서 일반직 담당 직원이 그 경위를 설명하게 함

● 일반직 직원에 의한 현안보고 절차를 두는 것도 검토 가능

- 벤치마킹 :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사법행정 현안보고 (전국 법원장간담회 / 사법행정위원회)

▣ 기대 효과

● 일반직 직원들이 사법행정을 통해 법관들을 지원한다는 이미지 제공

● 안건으로 제안되었거나 판사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이 일반직에게 전달되어 실제로 검토되었다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줌 ⇒ 만족도 제고

● 법원장은 중립적 이미지 취득, 부정적 답변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는 해당 실무자에게 전가

바. 부적절한 안건에 대한 의연한 대응

▣ 현 상황

● 판사회의에서 부적절한 안건 또는 의사진행발언이 제기되는 경우 많음

- 판사회의 내규를 부적절하게 개정하자는 취지의 안건

- 사무분담기준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

- 기타 판사회의의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초과하는 내용의 안건, 발언

●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응 미숙

- 문제 제기하는 판사는 용기있는, 민주적인, 이타적인 등 긍정적 이미지 획득 법원장은 보수적인, 폐쇄적인, 기득권자 등 부정적 이미지 낙인

- 법원장의 판사회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

▣ 구체적 대응 방안

● 기본 전제에 어긋나는 주장 : 단호한 대응

-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서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였고, 판사회의는 자문기구로 둔 취지를 명확히 설명

- 사법행정의 '민주화'는 '판사의 뜻'에 따른 행정이 아니라 '국민의 뜻'에 따른 행정을 의미함 ⇒ 국민이 정한 법률을 거스르면서 '민주주의' 논할 수 없음

● 기본 전제의 범위 내에서 제기되는 각종 주장 : 전략적이고 의연한 대응

- 내규 개정 요구에 관하여는 앞선 보고서 참조

- 그 밖의 다양한 주장에 대하여는 여유 있고, 의연한 태도로 대응 (자유로운 토론 진행, 의견 청취 등)

▣ 기대 효과

● 일선 법관들에게 사법행정, 판사회의에 관한 헌법적/법률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시킴

- 일반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'합법성'에 관한 민감성이 뛰어남 ⇒ 위법함이 명백한 주장에 대하여 쉽게 동조하지 않음

● 핵심 세력의 기본 구도인 '민주/비민주' 프레임 역이용

- 판사들에 의해 사법행정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'민주적'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함

- 오히려 헌법상 '민주적'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만든 법률에 부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근거로, 판사회의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를

'비민주적' 행위로 규정

● 이미지 싸움에서 우위 차지

- 부당한 요구 제기하는 판사 : 오히려 선동적, 감정적, 조직적, 독선적, 불법적 등 부정적 이미지 낙인

- 의연하게 대처하는 법원장 : 포용적, 합리적, 노련한 등 긍정적 이미지 획득 <끝>